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4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안 년 월 일 : 2023년 2월 28일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율 100분의 30과 차등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20% 감면함. (안 제34조제1항제10호)
- 나. 안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 (안 부칙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4조제1항 중 “제10호”, “제11호”, “제12호”, “제13호”, “제14호”의 호번호를 각각 “제11호”, “제12호”, “제13호”, “제14호”, “제15호” 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<u>세 명 이상</u>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(생략)</p> <p>13. (생략)</p> <p>14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<u>세가 2명 이상인</u>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(생략)</p> <p>13. (생략)</p> <p>14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<u>두 명이</u>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다만,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제10호”, “제11호”, “제12호”, “제13호”, “제14호”의 호번호를 각각 “제11호”, “제12호”, “제13호”, “제14호”, “제15호” 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(생략)</p> <p>13. (생략)</p> <p>14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제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